법무사법 및 법무사규칙의 시행에 관한 예규

[1996년 12월 26일] 행정예규 제307호 제정]

개정 2003. 9. 5. 행정예규 제519호 개정 2008. 7. 2. 행정예규 제759호 개정 2009. 1. 13. 행정예규 제789호 개정 2015. 12. 2. 행정예규 제1059호 전개 2016. 7. 27. 행정예규 제1086호 개정 2021. 2. 3. 행정예규 제1246호 개정 2024. 3. 28. 행정예규 제1387호

-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법무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법무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자격인정) ① 법무사의 자격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 인"이라 한다)가 규칙 부칙 제2조 및 구 법무사법시행규칙(대법원규 칙 제1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제1항에 따라 소 관 지방법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법무사 자격인정 신청서는 별 지 제1호 양식과 같다.
 - 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법원장이 규칙 부칙 제2조 및 구 법무 사법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대법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는 의견 서는 별지 제2호 양식에 의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기재하 여야 한다.
 - 1. 퇴직일자 및 퇴직사유
 - 2. 재직 중 비위사실의 유무
 - 3. 「법무사법」제6조의 결격사유의 유무
 - 4. 사실조사의 결과 및 자격인정 가부 의견

84 법무사법규집

- ③ 지방법원장은 제2항의 각 호의 사유를 조사함에 있어 신청인이 퇴직 당시 다른 법원에서 근무하였거나 헌법재판소 또는 검찰청에서 근무한 자인 경우에는 퇴직당시의 법원 또는 소속기관에 별지 제3호 양식의 사실조회서에 의한 조회를 하여야 하고 또한 신청인이 퇴직한 날로부 터 2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법무사 자격인정 신청을 한 경우에는 신원 조회 또는 범죄경력조회를 하여야 한다.
- ④ 지방법원장은 신청인이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법무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 또는 그 밖에 법무사로서의 적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면접 등의 방법으로 이를 조사·확인할 수 있다.
- ⑤ 규칙 부칙 제2조 및 구 법무사법시행규칙 제2조제4항의 법무사자격증 은 별지 제4호 양식, 법무사자격증 교부대장은 별지 제5호 양식과 같 다.
- ⑥ 규칙 부칙 제2조 및 구 법무사법시행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자격 증을 재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별지 제6호 양식의 법무사자격증 재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법원행정처장은 재교부신청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지 제7호 양식의 법무사자격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8호 양식의 법무사자격증 재교부대장에 이를 등재한다.
- ⑦ 규칙 부칙 제2조 및 구 법무사법시행규칙 제2조제6항에 따른 법무사자 격 불인정 통지서는 별지 제9호 양식과 같다.
- ⑧ 신청인에 대한 법무사 자격인정 가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한 때에는 별지 제10호 양식의 법무사자격인정 신청사건 처리부에 그 내용을 기재한다.
- 제3조 (법무사시험) ① 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환급해야할 경우와 그 환급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수험자가 시험의 일부라도 응시한 경우에는 제4호부터 제8호까지는 적용하지 아

니한다.

- 1.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자가 법원행정처장이 공고한 환급기간에 응 시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 2.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 3.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 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 4.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형제·자매, 본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가 시험일로부터 7일 전까지 사망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 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
- 5. 본인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입원기간에 시험일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
- 6. 국가가 인정하는 격리가 필요한 전염병 발생 시 국가(공공기관 포함) 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감염확정 판정을 받거나 격리대상자로 판정(격리기간에 시험일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되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
- 7. 북한의 포격도발 등 심각한 국가 위기단계로 휴가, 외출 등이 금지 (금지기간에 시험일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되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군인 또는 군무원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
- 8. 예견할 수 없는 기후상황으로 본인의 거주지에서 시험장까지의 대 중교통 수단이 두절되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100 분의 50
- 9. 위 각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

- ② 제1항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각 사유로 응시수수료 환급신청을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제1항 제4호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에 따른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면 및 같은 법 제84조제1항에 따 른 진단서 또는 검안서 등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2. 제1항 제5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입원사실 확인서
- 3. 제1항 제6호의 경우 국가(공공기관 포함) 또는 의료기관이 발급한 확인서
- 4. 제1항 제7호의 경우 군부대에서 발급한 확인서
- 5. 제1항 제8호의 경우 경찰서에서 발급한 확인서
- ③ 법원행정처장은 제2차 시험 응시자 중 합격자 결정에 필요한 자에 대하여 규칙 제5조제3항에 따른 신원조회 및 사실조사를 한다.
- ④ 규칙 제14조제2항의 합격증은 별지 제11호 양식, 법무사시험 합격 증 교부대장은 별지 제12호 양식, 같은 조 제3항의 법무사시험 합격증명원은 별지 제13호 양식과 같다.
- ⑤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시험일부면제신청서는 별지 제1-1호 양식 과 같다.
- 제4조 (법무사명부의 정리) ① 법원행정처장과 소관 지방법원장은 규칙 제19조제2항, 제43조제2항 및 제45조의5제1항에 따라 협회로부터 송부 반은 법무사명부, 법무사법인명부 및 법무사법인(유한)명부의 부본을 보존·관리하고, 협회로부터 위 명부의 변동사항을 보고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법무사명부, 법무사법인명부 및 법무사법인(유한)명부의 부본 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로 보존·관리할 수 있다.
- 제5조 (등록거부에 대한 이의신청) 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른 법무사등

록거부에 대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14호 양식과 같다.

- 제6조 (대체사무원 채용) ① 법무사[법무사합동사무소 및 법무사법인·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사무원이 출산휴가, 육아휴직, 병역휴직 등(이하 "휴직 등"이라 한다)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소속 지방법무사회의 승인을 얻어 추가로 대체사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 ② 법무사는 제1항에 따라 대체사무원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채용승인신청서와 휴직 등 사무원의 휴직 등 신청서 및 사무원 증을 소속 지방법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소속 지방법무사회는 대체사무원 채용승인을 하는 경우 휴직 등 사무원의 사무원증을 회수하고 소관 지방법원장에게 대체사무원 채용승인 보고와 함께 휴직 등 사무원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 등 사유 및 기간을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소속 지방법무사회가 제3항에 따라 대체사무원을 채용승인한 때에는 휴직 등 사무원은 대체사무원의 채용승인기간에는 규칙 제37조제5항에 따른 사무원의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⑤ 법무사는 휴직 등 사무원이 복직을 하는 경우 복직자의 성명, 생년월일, 복직일자를 기재한 복직신고서 및 대체사무원 또는 다른 사무원에 대한 사무원해임신고서와 사무원증을 소속 지방법무사회에 제출하여야하고, 휴직 등 사무원 또는 다른 사무원의 사직·해임 등에 따라 대체사무원을 계속 근무하게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사무원해임신고서를 소속 지방법무사회에 제출하여야한다.
 - ⑥ 소속 지방법무사회는 제5항의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 사무원의 복직 및해임, 대체사무원의 계속 근무 등에 관하여 지체 없이 소관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⑦ 대체사무원 채용 관련 업무처리 요령은 별지 1과 같다.

- 제7조 (사무원채용 승인거부에 대한 이의신청) ① 규칙 제37조제4항에 따른 사무원채용 승인거부에 대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15호 양식 과 같다.
 - ② 제6조에 따라 채용된 사무원의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 제8조 (법무사법인 등에 관한 문서의 양식) ① 법무사법인 · 법무사법인 (유한)의 설립 · 합병 · 정관변경에 관한 인가신청 절차 및 해산신고 절차 등에 필요한 문서의 양식은 별지 제16호부터 제25-1호까지 양식과 같다.
 - ② 규칙 제25조제4항에 따른 합동사무소의 해산신고서는 별지 제25-2호 양식과 같다.
- 제9조 (징계) ① 지방법원장은 법무사가 법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사징계위원회 (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② 지방법원장의 징계의결 요구가 있는 경우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체 없이 징계위원회를 소집하고 해당 법무사 또는 그 대리인에게 징 계위원회 소집일 5일 전까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징계 양정을 함에 있어서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게 된 동기, 위반의 내용, 정도와 피해회복 여부 및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지 여부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 ④ 규칙 제48조에 따라 법무사의 징계처분사항을 대법원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징계사유가 된 구체적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 ⑤ 규칙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결정 절차에도 제2항을 준용한다.

- 제10조(업무정지명령 절차 등) ① 소관 지방법원장은 규칙 제38조의2 제1항에 따라 지방법무사회장으로부터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위반 사실을 보고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법무사 또는 대리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② 해당 법무사 또는 대리인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③ 법무사가 규칙 제38조의2제4항에 따라 업무정지명령의 해제를 신청할 경우에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를 이행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라 함은 공제에 가입한 서류 또는 이행보증보험 증권 등을 말한다.
- 제11조 (업무검열) ① 규칙 제51조에 따른 업무검열은 지방법원장의 소속 5급 이상의 자에게 명하여 실시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업무검열은 별지 2와 별지 3의 착안점에 의하여 실시한다.
 - ③ 업무검열의 명령을 받은 자는 검열 결과를 서면으로 소관 지방법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2조 (사무소 공동사용에 관한 신고의 방식) 규칙 제50조제4호의 사무소 공동사용 신고서는 별지 제26호 양식과 같다.

부 칙

- **제1조 (시행일)** 이 예규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경과조치) ① 이 예규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소관 지방 법원장이 채용 승인한 사무원은 이 예규에 의하여 소속 지방법무사 회장이 승인한 것으로 본다.

90 법무사법규집

- ② 소관 지방법원장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사무원의 채용에 관계되는 모든 신청서와 그 부속서류는 계속 보존·관리한다. 그러나 소속 지방법무사회가 특정의 사무원에 대한 채용승인 신청서 및 그 부 속서류의 송부를 요청한 때에는 그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 제3조 (종전 예규의 폐지) 법무사법 및 동법시행규칙의 시행에 따른 사무처리 지침(1990. 2. 23. 행정예규 제140호)과 법무사감독사무처리 지침(1990. 2. 23. 행정예규 제141호)은 이를 각 폐지한다.

부 **칙** (2003. 9. 5. 행정예규 제519호) 이 예규는 2003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7. 2. 행정예규 제759호) 이 예규는 2008. 7. 7.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1. 13. 행정예규 제789호) 이 예규는 2009. 1. 19.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2. 2. 행정예규 제1059호) 이 예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7. 27. 행정예규 제1086호)

제1조 (시행일) 이 예규는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법무사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응시한 자에 대한 신원조회 및 사실조사는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에 따른다.
- 제3조 (다른 예규의 개정)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탁사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법무사합동법인"을 "법무사법인 법무사법인(유한)"으로 한다.

부 칙 (2021. 2. 3. 행정예규 제1246호)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부 칙 (2024. 3. 28. 행정예규 제1387호)

이 예규는 2024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대체사무원 채용 관련 업무처리 요령

1. 법무사

- 가. 사무원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병역휴직 등(이하 "휴직 등"이라 한다) 신청에 따른 대체사무원 채용승인신청 시 그 사유를 기재한 채용승인 신청서와 휴직 등 사무원의 휴직 등 신청서 및 사무원증을 소속 지방 법무사회에 제출
 - 1) 사무원채용승인신청서에 채용사유 기재
 - 예) ㅇㅇㅇ의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 채용
 - 2) 휴직 등 신청서에 휴직 등 사무원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 등 사유 및 기간 기재
- 나. 휴직 등 사무원이 복직을 하는 경우 복직자의 성명, 생년월일, 복직일 자 및 사무원증 환부신청 의사를 기재한 복직신고서와 대체사무원 또는 다른 사무원에 대한 사무원해임신고서 및 사무원증을 소속 지방법 무사회에 제출
 - 1) 휴직 등 사무원의 복직에 따른 대체사무원 또는 다른 사무원 해임 시 사무원해임신고서에 그 사유 기재
 - 2) 휴직 등 사무원 또는 다른 사무원의 사직·해임 등(이하 "해임 등"이라 한다)에 따라 대체사무원을 계속 근무하게 하고자 할 경우 사무원해임신고서에 그 사유 기재

2. 소속 지방법무사회

가. 대체사무원을 채용승인 하는 경우에 휴직 등 사무원의 사무원증을 회 수하고 관리 철저

- 나. 소관 지방법원장에게 대체사무원 채용승인 보고 시 휴직 등 사무원에 대한 성명, 생년월일, 휴직 등 사유 및 기간을 함께 보고
- 다. 법무사로부터 휴직 등 사무원의 복직에 따른 대체사무원 또는 다른 사무원의 해임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및 휴직 등 사무원 또는 다른 사무원의 해임 등에 따라 대체사무원을 계속 근무하게 하는 뜻이 기재된 사무원해임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신속히 소관 지방법원장에게 보고

3. 지방법원의 업무

- 가. 사무원의 휴직 등에 따른 대체사무원 채용승인보고서가 접수되면 즉시 법무사정보관리시스템에 대체사무원에 관한 사항을 입력하고 비고란에 "대체사무원임과 대체근무기간"을 입력하고, 휴직 등 사무원의 비고란 에 "휴직 등 사무원임과 휴직 등 기간 및 대체사무원에 관한 사항"을 입력
 - 예) 대체사무원 비고란 : ○○○ 육아휴직에 따른 채용, 2016. 1. 10. ~ 2017. 1. 9. 휴직 등 사무원 비고란 : 육아휴직, 2016. 1. 10. ~ 2017. 1. 9. 대체사무원 △ △(또는 대체사무원 미채용)
- 나. 휴직 등 사무원의 복직에 따른 대체사무원 또는 다른 사무원 해임신 고서가 접수되면 즉시 법무사정보관리시스템에 해임에 관한 사항을 입력하고 휴직 등 사무원의 비고란에 입력된 "휴직 등 사무원임과 휴직 등 기간 및 대체사무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휴직 등 사무원 또는 다른 사무원의 해임 등으로 대체사무원이 계속 근무하는 경우 대체사무원의 비고란에 입력된 "대체사무원임과 대체근무기간"을 삭제

[별지 2]

지방법무사회 업무검열 착안점

- 1. 법무사에 대한 지도 및 사무 연락 상황
- 2. 지방법무사회의 보고 의무 준수 상황
- 3. 회칙에서 정하여진 사항의 준수 여부
- 4. 법무사에 대한 회비징수 상황과 금품의 출납 및 장부정리 상황
- 5. 지방법무사회의 예산과 결산 상황
- 6. 지방법무사회의 재산의 운영 상황
- 7. 등록신청과 소속변경등록신청서 접수시 이를 7일 이내에 대한법무사 협회에 송부하고 있는지 여부
-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법무사 업무검열 착안점

- 1.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는가.
- 2. 사무소 설치구역을 이탈하여 타 구역내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지 않는가.
- 3. 업무에 관한 보수를 초과하여 받고 있는가.
- 4.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에 관한 위임을 거부하지는 않는가.
- 5. 업무범위를 초과하여 타인의 소송 그 밖의 쟁의 사건에 관여하고 있지 않는가.
- 6. 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고 있지 않는가.
- 7. 사건부를 규정대로 작성하고 있으며, 허위사실의 기재는 없는가(특히 위임인의 확인을 규정대로 하고 있는가).
- 8. 소속 지방법무사회의 승인을 얻어 사무원을 채용하는가.
- 9. 부당한 방법(행정사업을 하기 위하여「행정사법」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한 자나「공인중개사법」제9조의 규정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이용)으로 사건을 유치하고 있지는 않는가.
- 10. 규칙 제32조에 따라 위임을 받은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가.
- 11. 법령 또는 위임의 취지에 반하는 서류를 작성하고 있지는 않는가.
- 12. 위임인으로부터 보수를 받은 때 영수증을 작성하여 위임인에게 교부하고 그 부본을 진행번호순으로 편철하고 있는가.
- 13. 규칙 제50조 각 호의 해당 사유가 있을 때 이를 소관 지방법원장에 게 신고하는가.
- 14. 법무사의 등록을 한 자가 전혀 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타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사무원에게 일임하고 있지는 않는가.
- 15. 법무사의 보수에 관한 규정을 사무소 내에 게시하고 있는가.
- 16. 위의 사항 외에 법 또는 규칙에서 정한 의무규정 위반 여부
- 1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법무사 자격인정 신청서

신청인 :		()			
생년월일	:					
등록기준	지:					
주 소:						
설치예정	사무소 :					
업무개시	예정일 :					
자격인정	근거규정 : 「'	법무사법」	(법률 제686	50호) 부칙	제5조	
위 규정	에 의하여 법무	-사의 자격·	을 인정받고	자 신청합	니다.	
첨부서류 :	1. 이력서(사진 첨·	부) 1통				
	2. 「가족관계의 등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	ll1항제2호의 :	기본증명서	1통
	3. 주민등록표 초년	르 1통	_			
	4. 경력증명서	1통				
	5. 기타 소명자료					
			_			
			년	월	일	

대법원장 귀하

(연락전화 :

신청인

 $(210mm \times 297mm, 60g/m^2)$

<u>(P</u>)

)

법무사법 및 법무사규칙의 시행에 관한 예규 97

[별지 제1-1호 양식]

	법무사시험 시험일부면제신청서									
신청구분	□ 제1차 시	험 면제 □	제1차 시험 전3 시험 일부 과목	가목 및 제 면제	2차	법무사규칙 제8조제3항에 따른 추가 제출				
성 명		주민등록번호 -								
E-mail										
전 화 번 호	휴대폰 :		자택(직장)	:						
제출서류	1. 경력증명/ 2. 공무원 인	서 인사기록 임용발령	사항 출력물(공무	원인사기	록카드 사본)					
신청인은 「법무 제2항에 따라 경					브 면제를 받고	2자 「법무사규칙」 제8조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1항제1호에 따라 응	시자의 동의를 니다. 응시자는 수 있으나, 이 7	통한 개인정보 5 정보주체로서 개	및 고유식별정보(인정보의 삭제·	기하 '개약 처리정지 -	인정보'라 함)의 요구와 개인정5	! 제24조제1항제1호, 제17조제 의 수집·이용 및 이를 제3자 ^{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 :				
수집 • 이용	· 항목	수집] • 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연락처,	경력사항	법무사시험]의 일부 면제 '	업무	법무사시험	l 업무를 계속하는 동안				
■ 개인정보 수집 · 2. 개인정보 제3자 계		십니까? □ 동의	□ 미동의							
제공받는		 제공	<u></u> 목적	제-	공 항목	보유・이용기간				
법원, 검찰청, 학	헌법재판소	법무사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2	<u>-</u> 의2 제1항 및	성명, 주	스민등록번호, 력사항	각 기관이 정한 문서보존기간 동안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3. 동의 없이 수집・이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 내역 고지										
수집 · 이용 목적 수집 · 이용 항목 수집 근거										
법무사시험의 일부 면제 업무 주민등록번호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제5조제1항제6호										
본인은 본 동의서의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처리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본인의 권리를 이해하고 서명(날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 엔					

[별지 제2호 양식]

의 견 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퇴직(기관, 연월일, 사유): 비위사실 및 결격사유 유무

재직중비위사	직 무	형 사 처 벌 (약식명령 포함)	
) H	관	기 소 유 예	
위	련	징 계 처 분	
실	기	타	
<u>ا</u> ا	밖 에	불미스러운 일	
법 :	무사법	제6조 결격사유	

사실조사의 결과 및 자격인정 가부의견:

년 월 일

지방법원장 인

 $(210 \text{mm} \times 297 \text{mm}, 60 \text{g/m}^2)$

사 실 조 회 서

귀하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최종(근무자, 직위, 일자):

년 월 일 이 법원에 법무사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위 사람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법무사법시행규칙 부칙 제2조 및 구 법무사법시행규칙(대법원규칙 제1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3항에 따라 조회하오니 인사기록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조속히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회 내 용

- 1. 퇴직일자와 사유:
- 2. 재직중 비위사실 유무 및 그 내용

가. 직무관련 형사처벌(약식명령 포함)

- 나. 직무관련 기소유예
- 다. 직무관련 징계처분

라. 기 타

- 3. 그 밖에 불미스러운 일 유무
- 4. 법무사법 제6조 결격사유 유무
- 5. 그 밖에 참고사항

년 월 일

지 방 법 원 장

직인

 $(210 \text{mm} \times 297 \text{mm}, 60 \text{g/m}^2)$

[별지 제4호 양식]

자격증번호 제

호

사 진

법 무 사 자 격 증

 $3.5 \text{cm} \times 4.5 \text{cm}$

성 명:

생년월일:

자격취득일: 년 월 일

위 사람은 법무사법(법률 제6860호) 부칙 제5조에 따른 법무사의 자격이 있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법 원 행 정 처 장

직인

 $(210 \text{mm} \times 297 \text{mm}, 120 \text{g/m}^2)$

법무사법 및 법무사규칙의 시행에 관한 예규 101

[별지 제5호 양식]

법무사자격증 교부대장

결	담당관	과	장
르 재			

년

준영구 보존(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자격인정	자격증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자격근거	소관	교부(우송)	비고	계 인
일 자	번 호	한 글	한 자	구인등측인오	(법무사법)	법원	일 자	비고	게 인
•	1			_			•		
•	2			_			•		
•	3			_			•		
•	4			_			•		
•	5			_			•		
•	6			_			•		
•	7			_			•		
•	8			_			•		
•	9			_			•		
•	0			_			•		

 $(210mm \times 297mm, 60g/m^2)$

[별지 제6호 양식]

법무사 자격증	재교부 신청	성서	결	재
			법 원 장	
신 청 인:	()	사무국장	
생 년 월 일 :			총무과장	
주 소:			처 리 과	총 무 과
사 무 소:			접 일시	
자격취득일 : 년 월 일	일(자격증번호	:)	수 번호	
재교부 신청사유 :				
법무사법시행규칙 부칙 :	제2조 및 구	법무사법시	행규칙(대법	1워규칙 제
1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무사자격증의 재교부를 신			,,,,,,,,,,,,,,,,,,,,,,,,,,,,,,,,,,,,,,,	т., п
첨부서류 : 1. 대한법무사협	i회 등록증(A	<u> </u>		
2. 주민등록표		16/10		
3. 기타 소명자				
	년	월	일	
	Ľ	င	ᆫ	
	신청인		0	
	(연락전	화 :)	
법원행정처장 귀하				

Ļ

 $(210mm \times 297mm, 60g/m^2)$

[별지 제7호 양식]

재교부번호 제 호

사 진

법 무 사 자 격 증

 $3.5 \text{cm} \times 4.5 \text{cm}$

성 명: ()

생년월일:

자격취득일: 년 월 일(자격증번호:)

위 사람은 법무사법(법률 제6860호 부칙 제4조,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법무사의 자격이 있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법 원 행 정 처 장 직인

 $(210 \text{mm} \times 297 \text{mm}, 120 \text{g/m}^2)$

법무사자격증 재교부대장

ᆲ	담당관	과	장
결 재			
ΛII			

년

준영구 보존(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재 교 부	재교부	성	명	ᅎᇚᆮᆯᄔᅧᇹ	취득한	자격증	소관	교부	비고	ત્રા ા
접수일자	번 호	한 글	한 자	주민등록번호	연월일	번 호	법원	일자	(영수인)	계 인
•	1			_				•		
•	2			_	• •			•		
•	3			-	• •			•		
•	4			1	• •			•		
•	5			1	• •			•		
•	6			_	• •			•		
•	7			_	• •			•		
•	8			_	• •			•		
•	9			_	• •			•		
•	0			_	• •			•		

 $(210mm \times 297mm, 60g/m^2)$

법무사자격 불인정 통지서

신 청 인: ()

생년월일:

주 소:

자격인정 신청일:

신청인의 위 법무사자격인정신청에 대하여는 그 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법무사법시행규칙 부칙 제2조 및 구 법무사법시행규칙(대법원규칙 제1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6항에 따라 이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법 원 행 정 처 장 직인

 $(210mm \times 297mm, 60g/m^2)$

「변지	제10호	야시
	제 1 년 오	\sim

법무사자격인정 신청사건 처리부

7.	담당관	과 장
결		
재		

년

준영구 보존(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TI A OLTI	010111		소관	겯	<u> </u>	력 력		인정	7771-	Q 31 T1 =1		
접수일자	의안번호	성명	법원	기관	직위	기간	보정사항	일자	자격증번호	연락전화	HI .	Τ)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0							•				

※ 불인정의 경우는 비고란에 불인정의 취지와 일자를 주서함.

 $(210 \text{mm} \times 297 \text{mm}, 60 \text{g/m}^2)$

[별지 제11호 양식]

합격증번호 제 호

사 진

합 격 증

 $3.5 \text{cm} \times 4.5 \text{cm}$

성 명: ()

생년월일:

합격한 시험: 제 회 법무사시험(년 월 일 최종합격)

위 사람은 법무사법 제5조에 따른 위 시험에 합격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법 원 행 정 처 장 직인

 $(210mm \times 297mm, 120g/m^2)$

법무사시험 합격증 교부대장

- 1	담당관	과	장
결			
재			

년

준영구 보존(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ᅎᅬᄖᇹ	성	명	ᅎᇚᆮᄅᄖᇹ	ここいスコ	II 취 취 시	최종합격	7 H 0 T	비고	ત્રા ા
증서번호	한 글	한 자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시험회수	연 월 일	교부일자	(영수증)	계 인
1			_				•		
2			_				•		
3			_			• • •	•		
4			_			• • •	•		
5			_				•		
6			_				•		
7			_			• • •	•		
8			_			• • •	•		
9			_				•		
0			_				•		

 $(210mm \times 297mm, 60g/m^2)$

법무사시험 합격증명원

신	청	인 :	()
ピ	0	Ľ.	(,

생년월일:

합격한 시험: 제 회 법무사시험(년 월 일 최종합격)

합격증서번호: 제 호(년 월 일 발급)

위 신청인은 위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사실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②

법원행정처 귀중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법 원 행 정 처 사 법 등 기 국 장 지인

 $(210mm \times 297mm, 80g/m^2)$

[별지 제14호 양식]

법무사등록거부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청인 법무사 :		()	
생 년 월 일 :					
주 소:					
자격취득일 :	년 월	일(자	격증번호	:)
등록신청일 :					
등록거부통지서 수리	성일 :				
등록거부 사유 :					
본인은 법무사의	자격이 있어	l 대한법무	·사협회에	그 등록신청	성을 하였
으나 등록이 거부되					
무사규칙 . 제21조에					
, , , , , , , , , , , , , , , , , , , ,					
첨부서류: 1. 불복	이유서 1부				
	소명자료				
, , ,					
	년	월	일		
	_		_		
		위 법무시	_		<u>O</u>
			연락전화)
대법원장 귀하		(U7 U4	•	,
			(2	10mm×297mm,	60a/m²\
			(∠	10""" ^ 237 """,	00g/ iii)

법무사법 및 법무사규칙의 시행에 관한 예규 111

사무원채용 승인거부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청인 법무사 :		()	
생년월일 :					
주 소:					
채용승인 신청일 :					
채용승인 신청한 사무	구원				
성 명:		()	
생 년 월 일 :					
주 소:					
승인거부통지서 수령	일 :				
승인거부 사유 :					
신청인은 위 사람들용승인 신청을 하였. 조제4항에 따라 이의 첨부서류: 1. 불복이 2. 기타 :	으나 거부되어 신청합니다. 유서 1부				
	년	월	일		
	위	법무/	\ }		<u>(1)</u>
			(연락전화 :)
지방법원장 귀하					

※ 신청인이 합동사무소·법무사법인·법무사법인(유한)인 경우는 그 명칭과

 $(210mm \times 297mm, 60g/m^2)$

112 법무사법규집

대표자를 기재함.

법무사법인 설립인가 신청서

법인의 명칭	!:	법무시	·법인				
주사무소	:				(전화	:)
대표법무사	:		()	
	주민등록번	호:	_				
	주	소:					
	등록연월일	과 번호 :	년	월	일(제	ই)	
구성원법무	사 : 별지와	같음					
분사무	소 : 별지와	같음					
구성원 아닌	L 법무사 :	별지와 같음	-				
「법무사	법」제34조	및「법무시	-규칙」	제402	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법무사법인	의 설립인가	를 신청합니	1다.				
첨부서류 :	1. 정관 1투	<u> </u>					
	2. 경력증명	형서 부					
	3. 기타 소	명자료					
		년	월		일		
				대표병	법무사		<u>O</u>
				(연락	전화 :)
지방법원?	장 귀하						
					(210mm)	×297mm, 60	g/m²

(2)

구성원 아닌 법무사의 표시

(1) 성	명 :			()
주민등.	록번호 :		_	_	
주	소:				
드	록 :	년	월	일(등록번호 :)
(2) 성	명 :			()
주민등.	록번호 :		-	_	
주	ふ ・				

록 : 년 월 일(등록번호:)

법무사법인(유한) 설립인가 신청서

법인의 명칭: 법무사법인(유한)

주사무소 : 대표구성원 :

대표이사:

주민등록번호: -

주 소:

등록연월일과 번호: 년 월 일(제 호)

대 표 이 사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등록연월일과 번호: 년 월 일(제 호)

구성원법무사 : 별지와 같음 분 사 무 소 : 별지와 같음

구성원 아닌 법무사 : 별지와 같음

「법무사법」제47조의3 및「법무사규칙」제45조의5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법무사법인의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 1. 정관 1부

2. 경력증명서 부

3. 기타 소명자료

년 월 일

법무사법인(유한) 대표이사 @

(연락전화:)

지방법원장 귀하

 $(210 \text{mm} \times 297 \text{mm}, 60 \text{g/m}^2)$

법무사법 및 법무사규칙의 시행에 관한 예규 115

년 월 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 소:

등 록:

[별지 제17호 양식]

법무사법인 인가신청 처리부

년 준영구 보존(지방법원)

인가신청 일 자	인가번호	명 칭	대표자	주 사 무 소	인가일	교부일	비 고 (영수인)	계 인
	1							
	2							
	3							
	4							
	5							
	6							
	7							
	8							
	9							
	0							

 $(210 \text{mm} \times 297 \text{mm}, 60 \text{g/m}^2)$

[별지 제17-1호 양식]

법무사법인(유한) 인가신청 처리부

년 준영구 보존(지방법원)

인가신청 일 자	인가번호	명	칭	대표이사	주	사	무	소	인가일	교부일	비 고 (영수인)	계 인
	1											
	2											
	3											
	4											
	5											
	6											
	7											
	8											
	9											
	0		·									

법무사법인 인가대장

	인가	번호	제		호	인기) 		년	월	일		
	명	칭		법무사법인									
	주사	무소		(전화									
대	성	명		(
표	주민	등록번호		-									
법무	주	소											
사	등	록 번 호	제	2	호	UHO ::I	록		년	월	일		
	성	명	주민등록번호	<u></u>	등록	번호		주		=	소		
_			_										
			_										
구			_										
성			_										
원 법			_										
무			_										
사			_										
			_										
			_										
			_										
설	립등기	연월일	및 관할등기소	<u> </u>			•						

 $(210mm \times 297mm, 60g/m^2)$

	명	칭					Ę	법무사	법인				
분				소	재	刀	(?	전화)				사유,	일자
사													
무													
소													
	성	명	주	민등록	번호	등록	번호		주	소		사유,	일자
성				_									
구 성 원 아				_									
닌 법 무				_									
무				_									
사				_									
	변경	일자				변	경		내		용		
정													
관													
기													
타 사													
항													

법무사법인(유한) 인가대장

인	가	Ę	<u> </u>	호	제		호		ଧ	가		년		윧	ļ	일
명				칭			밭	법무/	나법인	<u>l</u> (유형	<u>타</u>)					
주	사			소								(전호	화)
	성			명						()
대 표	주 [민 등	록 빈	선호												
아 사	주			소												
7.11	Olu	록	번	호	제		호	- Io	<u>=</u>	록			년		월	일
	성			명			'			(')
대 표	주 (민 등	록 빈	선호					_							
사 사	주			소												
7.11	Oll	록	번	호	제		호	I	=	록		٤	<u> </u>	월	Ç	일
	성			명	주민등록번호	5	등 록	번	호		,	주			소	
					_											
					_											
구					_											
성					_											
원 법					_											
무					_											
사					_											
					_											
					_											
					_											
설립등기 연월일 및 관할등기소																

	명	칭					법무	사법(인(유	한)			
분				소	재	刀	(7	전화)				사유,	일자
사													
무													
소													
	성	명	주	민등록	번호	등록	번호		주	소		사유,	일자
성				_									
구 성 원 아				_									
닌 법 무				_									
무기				_									
사				_									
	변경	일자				변	경		내		용		
정													
관													
기													
타 사													
항													

[별지 제19호 양식]

법무사법인 설립인가증

인가번호:제호

명 칭: 법무사법인

주사무소 :

대표법무사: ()

주민등록번호: -

법무사법 제34조에 따라 위 법무사법인의 설립을 인가함.

년 월 일

지 방 법 원 장 직인

법무사법인(유한) 설립인가증

인가번호 : 제	<u>ই</u>		
명 칭:	법무사법	인(유한)	
주사무소 :			
대표이사 :	()	
주민등록번호 :	_		
대표이사 :	()	
주민등록번호 :	_		
법무사법 제47조의3 무사법인(유한)의 설립을		칙」 제45조의5제1항에	따라 위 법
	년 월	일	
		지 방 법 원 장	직인

법무사법인 합병인가 신청서

(신설합병)

신설될 명칭 :	법무사회	법인			
주사무소 :		(전:	화 :)	
대표법무사 :	()		
주민등록번호 :	_				
주 소:					
등록연월일과 번호 :	년	월	일(제	ই	_)
구성원법무사 : 별지와 같은	<u>)</u>				
분 사 무 소 : 별지와 같	<u>o</u> _				
구성원 아닌 법무사 : 별지	. — .				
합병하는 법인 : (1)			가번호 :)
	무사 :		(,
	법무사법		가번호 : ,)
대표법	무사 :		()
「법무사법」제45조 및	「법무사규칙	일 ₋ 제40	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법무사법인의 합병인가를			0 — 11 0 11	, ,	,,, ,,,,,,,,,,,,,,,,,,,,,,,,,,,,,,,,,,,
첨부서류 : 1. 신・구 정관	각 1부				
2. 인가증(원본) 각 1부				
3. 회의록 1부					
4. 기타 소명자	료				
년	월		일		
	гÀ	표 법무	. Հ Լ		<u>(P</u>)
		и ві (연락전)
지방법원장 귀하					
			(210mm	$\times 297$ mm	, 60g/m²)

```
[별지 제20호 양식]
                                     (제2면)
구성원법무사의 표시
  (1)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주 소:
     등록연월일과 번호 :
                       월
                          일(등록번호 :
                   녆
  (2)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주 소:
    등록연월일과 번호:
                       월
                   녆
                          일(등록번호:
                                     )
  (3)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주 소:
    등록연월일과 번호 :
                          일(등록번호:
                       월
                   녆
  (4)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주 소:
    등록연월일과 번호 : 년 월 일(등록번호 :
분사무소의 표시
  (1)
  (2)
구성원 아닌 법무사의 표시
  (1)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일(등록번호 :
     등
           록 :
                     월
                 녆
  (2) 성
                            (
          명 :
    주민등록번호:
    주
           소:
    등
                          일(등록번호: )
           록 :
                 녆
                     월
                            (210 \text{mm} \times 297 \text{mm}, 60 \text{g/m}^2)
```

법무사법인(유한) 합병인가 신청서 (신설합병)

신설될 명칭 :	법무사법				
주사무소 :		(전화	· :)	
대표이사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_)		
등록연월일과 번호:	년	월	일(제)	ত্র)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_		ŕ		
등록연월일과 번호 :	년	월	일(제	호)	
구성원법무사 : 별지와 같음 분 사 무 소 : 별지와 같음 구성원 아닌 법무사 : 별지와 합병하는 법인 : (1) 대표이사 (2)	법무사법		())
	百十八百 :		(17702)))
「법무사법」제47조의14 및 이 법무사법인(유한)의 합병인				따라 우	l와 같
첨부서류 : 1. 신·구 정관 각 2. 인가증(원본) ² 3. 회의록 1부 4. 기타 소명자료					
년	월		일		
		H표 이시 연락전화	•)

지방법원장 귀하

```
「별지 제20-1호 양식〕
                                     (제2면)
구성원법무사의 표시
  (1)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주 소:
     등록연월일과 번호 :
                       월
                          일(등록번호 :
                    녆
  (2)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주 소:
     등록연월일과 번호:
                       월
                    녆
                          일(등록번호:
                                      )
  (3)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주 소:
    등록연월일과 번호 :
                          일(등록번호:
                       월
                    녆
  (4)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주 소:
    등록연월일과 번호 : 년 월 일(등록번호 :
분사무소의 표시
  (1)
  (2)
구성원 아닌 법무사의 표시
  (1)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등
           록 :
                      월
                          일(등록번호 :
                 녆
          명 :
  (2) 성
                             (
                                     )
    주민등록번호:
    주
           소:
    등
                          일(등록번호: )
           록 :
                 녆
                     월
                            (210 \text{mm} \times 297 \text{mm}, 60 \text{g/m}^2)
```

법무사법인 합병인가 신청서

(흡수합병)

존속하는 법인의 표시							
명 칭:	법두	무사법인(인]가번호 :)		
주사무소 :			(전화 :)	
대표법무사 :	()			
소멸하는 법인의 표시	:						
명 칭:	법두	무사법인(인]가번호 :)		
주사무소 :			(전화 :)	
대표법무사 :	()			
법무사법인의 합병인기 첨부서류 : 1. 신·구 2. 소멸하 3. 회의록 4. 기타 소	정관 각 는 법인의 1부	1부	[본) 1부				
	년	월	일				
	١	대표 법무	사			<u></u>)
		(연락전화	· :)	
지방법원장 국	귀하						
, 5 11 2 5			(2	Omm >	×297m	™, 60g	g/m²

법무사법인(유한) 합병인가 신청서

(흡수합병)

존속하는 법인의 표시			
명 칭:	법무사법인(유한)(인가번호 :)
주사무소 :	(전	화:)
대표법무사 :	()	
소멸하는 법인의 표시 :			
명 칭:	법무사법인(유한)(인가번호 :)
주사무소 :	(전	화:)
대표법무사 :	()	
「법무사법」제47조의14 같이 법무사법인(유한)의 합 첨부서류 : 1. 신·구 정관 2. 소멸하는 법 3. 회의록 1부 4. 기타 소명자	압병인가를 신청합니 각 1부 인의 인가증(원본)	다.	따라 위와
7. 719 1 0/1	11L		
년	월	일	
	대표이사		<u>(a)</u>
	(연락전화 :)
지방법원장 귀하			
ाठवर्ग गु		(210mm×297	'mm, 60a/m²'
		(= : 5 = = 0)	, 559, 1

법무사법인 합병인가증

인	가	번	호	<u> </u>			
	합	병으	로	인하여	존속(신설)하는 법인의 표시		
명			충	J:	법무사법인		
주	사	무	소	≥:	(전화 :)
대	丑も	법 두	⊒ 人	 :	()	
	합	병으	로	인하여	소멸하는 법인의 표시		
명				칭:	법무사법인		
소		재		지:			
대	표	법	무	사:			

「법무사법」제45조 및「법무사규칙」제4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법무사법인의 합병을 인가함.

년 월 일

지 방 법 원 장 직인

 $(210mm \times 297mm, 60g/m^2)$

법무사법인(유한) 합병인가증

인	가	번	호:			
	합성	병으로	르 인하여	존속(신설)하는 법인의 표시		
명			칭:	법무사법인(유한)		
주	사	무	소:	(전화 :)
대	丑	01	사:	()	
	합성	병으로	르 인하여	소멸하는 법인의 표시		
명			칭:	법무사법인(유한)		
소		재	지:			
대	표	01	사:			

「법무사법」제47조의14 및「법무사규칙」제45조의5에 따라 위와 같이 법무사법인(유한)의 합병을 인가함.

년 월 일

지 방 법 원 장 직인

법무사법인 정관변경 인가신청서

명	칭:	법	무사법인(인	!가번호:)		
주 사	무 소:			(전화 :)	
대 표 법	! 무 사:		()		
변경하는	= 정관의 내	용 :					
「법무기	사법 제34 <i>3</i>	<u>.</u> 및「법」	무사규칙 _고	ll41조제1항이	∥ 따라	위와	같이
	-법인의 정관		_				
첨부서류	: 1. 정관변	경이유서	1부				
	2. 정관변						
	3. 구성원		무				
	4. 기타 소	_ 병사료					
		년	월	일			
			_	_			
			대표 법	무사		0	Ď
			(연락전	화:)
	지방법원장	귀하					

법무사법 및 법무사규칙의 시행에 관한 예규 133

법무사법인(유한) 정관변경 인가신청서

명	칭:	법무사법인(유형	한)(인가번호:)
주 사 무	소:		(전화 :)
대 표 이	사:	()	
변경하는 정	!관의 내용 :				
「법무사법	」제47조의3 및	!「법무사규칙 __	제45조의5저	∥1항에	따라 위
와 같이 위 법	법무사법인(유한)	의 정관변경의	인가를 신청	합니다.	
	. 정관변경이유시				
	. 정관변경안 1 [±] . 구성원 회의록				
	. 기 8 년 되거ㅋ . 기타 소명자료				
	년	월	일		
		대표이사	a .		<u>@</u>
		(연락전화	斗:)
지병	방법원장 귀하				
			(210mm>	<297mm,	60g/m²)

법무사법인 정관변경 인가서

인가번호 : 제	<u>ॅ</u>		
명 칭:	법무사법	인	
주사무소 :	(전호	ो :)
대표법무사 :	()	
정관변경 내용 :			

「법무사법」제34조 및「법무사규칙」제4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관변경을 인가함.

년 월 일

지 방 법 원 장 직인

 $(210mm \times 297mm, 60g/m^2)$

법무사법인(유한) 정관변경 인가서

인가번호 : 제	ই		
명 칭:	법무사법의	긴(유한)	
주사무소 :	(전호	斗:)
대표이사 :	()	
정관변경 내용 :			

「법무사법」제47조의3 및「법무사규칙」제45조의5제1항에 따라 위 와 같이 정관변경을 인가함.

년 월 일

지 방 법 원 장 직인

법무사법인 해산신고서

해산한 법인 :	법무사법	법인		
대표법무사 : 주 사 무 소 :		()
인 가:	년 월	일(인기	가증번호 :)
해산연월일 :				
해 산 사 유 : 법무시	-법 제44조	: 제1항 제	<u>ō</u>	
위 법인은 위와 같이 해산신고를 합니다.	해산하였、	으므로 법-	무사법 제44 <i>조</i>	:제2항에 따라
첨부서류 : 1. 법무사법약 2. 해산을 증				
	년	월	일	
		신고인		(1)
지방법원장 귀	하			

해산한 법인 : 법무사법인(유한)

법무사법인(유한) 해산신고서

	대표이	사 :			()
	주 사 두	구소:						
	인	가:	년	월	일(인	가증번호	. :)
해산	연월일 :							
해	산 사 -	유 : 법무	사법 제4	7조의	13 제1	항 제	호	
위	법인은	위와 같	이 해산히	하였으	므로 팀	법무사법	제47조의	13제2항에
따라	해산신고	l를 합니	구.					
첨부	서류 : 1.					-) 1부		
	2.	해산을	증명하는	서류	1부			
			1-3	ó۱		٥١		
			년	월		일		
					신고인			<u> </u>
					で単し			0

 $(210mm \times 297mm, 60g/m^2)$

지방법원장 귀하

합동사무소 해산신고서

해산한 사무소 :	합동사무소	
대표법무사 :	()
주사무소:		
해산연월일 :		
해 산 사 유 :		

위 합동사무소는 위와 같이 해산하였으므로 법무사규칙 제25조제4항에 따라 해산신고를 합니다.

첨부서류: 1. 대한법무사협회 등록증(사본) 각1부 2. 해산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년 월 일 신고인 ®

지방법원장 귀하

사무소 공동사용 신고서									
	성	명				주민등	록번호		
신고	주	소			'				
법무사	등록약	면월일	년	월	일	등록	번호	제	ই
	사 득	구 소							
사무소	성	명				주민등	록번호		
공동사용자	주	소							
0 0 1 0 1	업	종							
사무소공동사	용 개시	연월일		Ļ	년 	월	일		
소속회 경유				지기	년 방투	법무사호	월 장	Ó	<u>0</u>
	ТОПТТТО								
「법무사규칙」제50조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Ę	1	월	일	
			신	고인	낟	립무사		<u>(</u>)
지방법원장 귀하									

 $(210\text{mm}\times297\text{mm}, 60\text{g/m}^2)$